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위상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8133
----------	-------

발의연월일 : 2026. 4. 6.

발 의 자 : 김위상 · 김선교 · 조지연
신성범 · 박충권 · 박성훈
김기웅 · 김성원 · 김승수
송석준 · 한기호 · 김형동
의원(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택시요금 결정 체계는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일방적으로 정하는 구조로서, 이로 인한 원가 반영 지연과 정치적 요인에 따른 요금 동결이 빈번하여 산업 생태계는 만성적인 적자, 기사 처우 악화, 서비스 질 하락의 악순환에 빠져있는 상황임. 최근에는 고유가, 고환율, 고물가 3고 쇼크가 고착화하며, 택시산업의 어려움은 더욱 가중되고 있음.

이는 국내 택시운송사업이 민영제임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대중교통에 준하는 공공재로 간주하여 요금을 과도하게 통제한 결과로, 택시산업 붕괴의 주요한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음.

이에 각 시·도에 교통·경제전문가, 관계 공무원 및 택시운송사업자단체, 택시운수종사자단체, 소비자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등으로 구

성된 제3의 독립적인 기구에서 객관적 데이터를 기반으로 요금을 심의·의결하도록 하고, 의결한 바에 따라 시·도지사가 점진적·합리적 수준의 요금을 정하도록 하여 만성적 침체에 빠진 택시산업을 재건하고 종사자 처우를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2 신설 등).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5항 중 “제1항의”를 “이 법에서 정한 사항 외에 제1항의”로 한다.

제8조의2 및 제8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택시 운임·요금의 기준과 요율의 결정 등) ① 시·도지사는 제8조제1항에 따라 택시 운임·요금의 기준과 요율을 정하는 경우 제8조의3에 따른 택시운임관리위원회(이하 이 조 및 제8조의3에서 “위원회”라 한다)에 심의를 요청하고, 위원회가 심의하여 의결한 바에 따라 그 기준과 요율을 정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공청회를 개최하여 택시의 운임·요금과 요율의 적정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제8조의3(택시운임관리위원회의 설치·운영) ① 택시 운임·요금의 기준과 요율에 관한 심의와 그 밖에 택시의 운임이나 요금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도에 택시운임관리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도지사가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1. 교통·경제 분야에 관한 학식이 풍부한 사람
2.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택시운송사업자 및 택시운수종사자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3. 소비자단체 및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4. 교통정책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시·도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④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8조(운임 · 요금의 신고 등) ① ~ ④ (생 략)</p> <p>⑤ <u>제1항의</u> 운임 · 요금의 기준 과 <u>요율의 결정에 필요한 사항</u> 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p> <p>⑥ (생 략)</p> <p><u><신 설></u></p>	<p>제8조(운임 · 요금의 신고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p> <p>⑤ <u>이 법에서 정한 사항 외에</u> <u>제1항의</u>----- -----.</p> <p>⑥ (현행과 같음)</p> <p><u>제8조의2(택시 운임 · 요금의 기</u> <u>준과 요율의 결정 등) ① 시 ·</u> <u>도지사는 제8조제1항에 따라</u> <u>택시 운임 · 요금의 기준과 요</u> <u>율을 정하는 경우 제8조의3에</u> <u>따른 택시운임관리위원회(이하</u> <u>이 조 및 제8조의3에서 “위원</u> <u>회”라 한다)에 심의를 요청하</u> <u>고, 위원회가 심의하여 의결한</u> <u>바에 따라 그 기준과 요율을</u> <u>정하여야 한다.</u></p> <p><u>② 시 · 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u> <u>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1회 이</u> <u>상 공청회를 개최하여 택시의</u> <u>운임 · 요금과 요율의 적정성을</u> <u>검토하여야 한다.</u></p> <p><u>제8조의3(택시운임관리위원회의</u></p>
<p><u><신 설></u></p>	<p><u>제8조의3(택시운임관리위원회의</u></p>

설치·운영) ① 택시 운임·요금의 기준과 요율에 관한 심의와 그 밖에 택시의 운임이나 요금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도에 택시운임관리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도지사가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1. 교통·경제 분야에 관한 학식이 풍부한 사람
2.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택시운송사업자 및 택시운수종사자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3. 소비자단체 및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4. 교통정책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시·도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④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
도의 조례로 정한다.